

예천군 고시 제2015-63호

예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예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4일

예 천 군 수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과 같음

가. 근린공원

- 신규 : 남산공원 외 4개소
- 변경 : 서본공원

나. 어린이공원

- 신규 : 백전공원 외 9개소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도면 : 계제생략

3. 이해관계인은 예천군청 건축도시과 (054-650-634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붙임)

예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I. 근린공원

1.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남산 공원	근린 공원	예천읍 남본리	71,700	-	71,700	건고 제713호 (1967.12.26.)	예천읍 도시지역
기정	2	노상 공원	근린 공원	예천읍 노상리	35,730	-	35,730	건고 제713호 (1967.12.26.)	예천읍 도시지역
기정	3	서본 공원	근린 공원	예천읍 서본리	72,786	-	72,786	건고 제713호 (1967.12.26.)	예천읍 도시지역
기정	4	지내 공원	근린 공원	예천읍 지내리	32,400	-	32,400	건고 제713호 (1967.12.26.)	예천읍 도시지역
기정	1	읍부 공원	근린 공원	용궁면 읍부리	12,730	-	12,730	건고 제205호 (1977.6.29.)	용궁면 도시지역
기정	1	감천 공원	근린 공원	감천면 포리	21,860	-	21,860	경고136호 (1976.7.20.)	감천면 도시지역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구분	시설명	공원면적(m ²)	시설면적(m ²)	건축면적(m ²)	비고
신설	남산공원	71,700	25,454	790.36	시설율 : 35.5%
신설	노상공원	35,730	9,209	64.5	시설율 : 25.8%
기정	서본공원	72,786	25,810	3,548.0	시설율 : 35.5%
변경		72,786	25,998	3,513.02	시설율 : 35.7%
신설	지내공원	32,400	11,000	800.0	시설율 : 34.0%
신설	읍부공원	12,730	2,398	86.4	시설율 : 18.8%
신설	감천공원	21,860	2,272	-	시설율 : 10.4%

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고
1	남산공원	근린공원 신설 - 시설율 : 35.5%	- 예천 군관리계획상의 공원녹지구상 및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공원조성 계획 결정 - 예천의 상징공원으로써 기 조성된 공원시설 - 의 결정과 예천 세계활축제에서 운영한 필드아치리 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활의 고장 정체성 고취	예천읍 도시지역
2	노상공원	근린공원 신설 - 시설율 : 25.8%	- 예천 군관리계획상의 공원녹지구상 및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공원조성 계획 결정 - 지형적 특성과 경관성을 고려하여 훼손이 심한 산자락 산림의 복원 및 대창 중고교 학생과 지역주민의 운동, 휴식, 여가 공간 조성	예천읍 도시지역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고
3	서본공원	근린공원 변경 - 시설율 변경 • 35.5% → 35.7% - 시설 변경 •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도로 변경 - 시설 폐지 • 정구장, 배구장, 파고라2 - 시설 신설 • 게이트볼장, 공중화장실3	• 기 공원조성계획시설과 현재 조성된 시설의 불부합 지역에 대한 변경 • 예천문화회관, 노인복지시설, 게이트볼장 등기 조성된 시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공원 여건상 불합리한 운동시설 및 휴양시설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도로, 주차장, 광장, 녹지 등의 시설에 대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예천읍 도시지역
4	지내공원	근린공원 신설 - 시설율 : 34.0%	• 예천 군관리계획상의 공원녹지구상 및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공원조성계획 결정 • 공원입지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찾아오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예천군의 다양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배드민턴장)조성	예천읍 도시지역
1	읍부공원	근린공원 신설 - 시설율 : 18.8%	• 예천 군관리계획상의 공원녹지구상 및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공원조성계획 결정 • 기 조성된 문화자원 및 산림자원의 보전 • 용궁면의 지역 스토리텔링(토끼간 빵 등)을 반영하여 여가, 휴식 공간 조성	용궁면 도시지역
1	감천공원	근린공원 신설 - 시설율 : 10.4%	• 예천 군관리계획상의 공원녹지구상 및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공원조성계획 결정 • 부족한 가용지를 감안한 보존형 공원 조성 및 지역주민들의 소통 및 휴식을 위한 커뮤니티형 공원 조성	감천면 도시지역

4. 공원별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

■ 남산공원

1)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구 분	시설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		구성비 (%)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신 설	합 계	71,700	25,454	790.36	1,026.65	100.0	
	기반시설	5,739	5,739	—	—	8.0	
	휴양시설	196	196	—	—	0.3	
	운동시설	15,990	15,990	400.14	445.20	22.3	
	교양시설	1,069	1,069	154.81	266.98	1.5	
	편익시설	2,460	2,460	235.41	314.47	3.4	
	녹지및기타	46,246	—	—	—	64.5	
◦ 시설율 : $25,454 \div 71,700 \times 100 = 35.5\%$ (법정 40%이하)							

■ 노상공원

1)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구 분	시설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		구성비(%)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신 설	합 계	35,730	9,209	64.5	81.0	100.0	
	기반시설	3,526	3,526	—	—	9.9	
	조경시설	4,345	4,345	16.5	33.0	12.2	
	휴양시설	370	370	—	—	1.0	
	운동시설	740	740	—	—	2.1	

구분	시설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		구성비(%)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132	132	—	—	0.4	
	편익시설	96	96	48.0	48.0	0.3	
	녹지및기타	26,521	—	—		74.2	
◦ 시설율 : $9,209 \div 35,730 \times 100 = 25.8\%$ (법정 40%이하)							

■ 서본공원

1)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구분	시설구분	기정					변경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구성비 (%)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		구성비 (%)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변경	합계	72,786	25,810	3,548	7,282	100.0	72,786	25,998 (증188)	3,513.02 (감34.98)	7,337.18 (증55.18)	100.0
	기반시설	7,740	7,740	—	—	10.6	9,973 (증2,233)	9,973 (증2,233)	—	—	13.7
	조경시설	1,570	1,570	—	—	2.2	202 (감1,368)	202 (감1,368)	—	—	0.3
	휴양시설	3,000	3,000	539	1,485	4.1	3,077 (증77)	3,077 (증77)	675.32 (증136.32)	1,716.89 (증231.89)	4.2
	유희시설	1,200	1,200	—	—	1.6	1,200	1,200	—	—	1.6
	운동시설	2,540	2,540	—	—	3.5	663 (감1,877)	663 (감1,877)	—	—	0.9

구분	시설구분	기정					변경				
		부지면적 (㎡)	시설 면적 (㎡)	건축물 (㎡)		구성비 (%)	부지면적 (㎡)	시설 면적 (㎡)	건축물 (㎡)		구성비 (%)
				건축 면적	연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교양 시설	8,150	8,150	2,806.5	5,613.09	11.2	7,618 (감532)	7,618 (감532)	2,738.5 (감178.50)	5,517.09 (감183.91)	10.5
	편의 시설	1,610	1,610	92	96	2.2	3,265 (증1,655)	3,265 (증1,655)	992 (증7.2)	103.2 (증7.2)	4.5
	녹지 및 기타	46,976	—	—	—	64.5	46,788 (감188)	—	—	—	64.3
		◦ 시설율 : $25,810 \div 72,786 \times 100 = 35.5\%$ (법정 40%이하)					◦ 시설율 : $25,998 \div 72,786 \times 100 = 35.7\%$ (법정 40%이하)				

■ 지내공원

1)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구분	시설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		구성비(%)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신 설	합 계	32,400	11,000	800	800	100.0	
	기반시설	6,239	6,239	—	—	19.2	
	휴양시설	929	929	—	—	2.9	
	운동시설	1,203	1,203	800	800	3.7	
	편의시설	2,629	2,629	—	—	8.1	
	녹지및기타	21,400	—	—	—	66.1	
		◦ 시설율 : $11,000 \div 32,400 \times 100 = 34.0\%$ (법정 40%이하)					

■ 읍부공원

1)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구분	시설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		구성비(%)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신 설	합 계	12,730	2,398	86.4	86.4	100.0	
	기반시설	1,052	1,052	—	—	8.3	
	휴양시설	662	662	—	—	5.2	
	교양시설	684	684	86.4	86.4	5.4	
	녹지및기타	10,332	—	—	—	81.2	
	◦ 시설율 : $2,398 \div 12,730 \times 100 = 18.8\%$ (법정 40%이하)						

■ 감천공원

1)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구분	시설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		구성비(%)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신 설	합 계	21,860	2,272	—	—	100.0	
	기반시설	1,193	1,193	—	—	5.5	
	조경시설	226	226	—	—	1.0	
	휴양시설	853	853	—	—	3.9	

구분	시설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		구성비(%)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녹지및기타	19,588	—	—	—	89.6	
◦ 시설율 : $2,272 \div 21,860 \times 100 = 10.4\%$ (법정 40%이하)							

II. 어린이공원

1.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백전 공원	어린이 공원	예천읍 동본리	1,500.0	—	1,500.0	1985.3.15. (경고43호)	예천읍 도시지역
기정	2	동본 공원	어린이 공원	예천읍 동본리	1,500.0	—	1,500.0	1985.3.15. (경고43호)	예천읍 도시지역
기정	3	남본 공원	어린이 공원	예천읍 동본리	2,300.0	—	2,300.0	1985.3.15. (경고43호)	예천읍 도시지역
변경	4	청북 공원	어린이 공원	예천읍 청북리	2,000.0	증) 1,000.0	3,000.0	1985.3.15. (경고43호)	예천읍 도시지역, 구적오차 정정변경
기정	5	대심 제1공원	어린이 공원	예천읍 대심리	2,230.0	—	2,230.0	1985.3.15. (경고43호)	예천읍 도시지역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6	대심 제2공원	어린이 공원	예천읍 대심리	1,600.0	-	1,600.0	1985.3.15. (경고43호)	예천읍 도시지역
기정	7	대심 제3공원	어린이 공원	예천읍 대심리	2,500.0	-	2,500.0	1985.3.15. (경고43호)	예천읍 도시지역
기정	8	우계 공원	어린이 공원	예천읍 우계리	1,600.0	-	1,600.0	1985.3.15. (경고43호)	예천읍 도시지역
기정	9	읍부 공원	어린이 공원	용궁면 읍부리	1,500.0	-	1,500.0	1977.4.28. (경고131호)	용궁면 도시지역
기정	10	포동 공원	어린이 공원	감천면 포 리	7,615.0	-	7,615.0	1976.7.20. (경고136호)	감천면 도시지역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구분	시설명	공원면적(m ²)	시설면적(m ²)	건축면적(m ²)	비고
신설	백전공원	1,500.0	690.0	-	시설율 : 46.0%
신설	동본공원	1,500.0	860.0	-	시설율 : 57.3%
신설	남본공원	2,300.0	920.0	-	시설율 : 40.0%
신설	청북공원	3,000.0	1,430.0	-	시설율 : 47.7%
신설	대심제1공원	2,230.0	1,095.0	-	시설율 : 49.1%

구분	시설명	공원면적(m ²)	시설면적(m ²)	건축면적(m ²)	비고
신설	대심제2공원	1,600.0	865.0	—	시설율 : 54.1%
신설	대심제3공원	2,500.0	1,365.0	—	시설율 : 54.6%
신설	우계공원	1,600.0	685.0	—	시설율 : 42.8%
신설	읍부공원	1,500.0	690.0	—	시설율 : 46.0%
신설	포동공원	7,615.0	1,610.0	—	시설율 : 21.1%

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 고
1	백전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 시설율 : 46.0%	• 기 조성된 백전공원을 조성계획으로 반영하여 정리함	예천읍 도시지역
2	동본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 시설율 : 57.3%	• 기 설계된 동본공원을 조성계획으로 반영하여 정리함	예천읍 도시지역
3	남본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 시설율 : 40.0%	• 예천 군관리계획상의 공원녹지구상 및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공원조성계획 결정 • 예천의 부족한 어린이공원시설의 결정과 예천 의 지역적 특성, 문화, 여가의 활성을 위하여 예천군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2015년 9월말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 도시공원 결정 효력이 상실되므로 기 결정된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필요	예천읍 도시지역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 고
4	청북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 시설율 : 47.7%	- 예천 군관리계획상의 공원녹지구상 및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공원조성계획 결정 - 예천의 부족한 어린이공원시설의 결정과 예천 의 지역적 특성, 문화, 여가의 활성을 위하여 예천군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2015년 9월말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 도시공원 결정 효력이 상실되므로 기 결정된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필요	예천읍 도시지역
5	대 심 제1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 시설율 : 49.1%	- 예천 군관리계획상의 공원녹지구상 및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공원조성계획 결정 - 예천의 부족한 어린이공원시설의 결정과 예천 의 지역적 특성, 문화, 여가의 활성을 위하여 예천군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2015년 9월말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 도시공원 결정 효력이 상실되므로 기 결정된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필요	예천읍 도시지역
6	대 심 제2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 시설율 : 54.1%	- 예천 군관리계획상의 공원녹지구상 및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공원조성계획 결정 - 예천의 부족한 어린이공원시설의 결정과 예천 의 지역적 특성, 문화, 여가의 활성을 위하여 예천군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2015년 9월말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 도시공원 결정	예천읍 도시지역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 고
			효력이 상실되므로 기 결정된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필요	
7	대 심 제3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 시설율 : 54.6%	- 예천 군관리계획상의 공원녹지구상 및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공원조성계획 결정 - 예천의 부족한 어린이공원시설의 결정과 예천 의 지역적 특성, 문화, 여가의 활성을 위하여 예천군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2015년 9월말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 도시공원 결정 효력이 상실되므로 기 결정된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필요	예천읍 도시지역
8	우계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 시설율 : 42.8%	- 예천 군관리계획상의 공원녹지구상 및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공원조성계획 결정 - 예천의 부족한 어린이공원시설의 결정과 예천의 지역적 특성, 문화, 여가의 활성을 위하여 예천군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2015년 9월말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 도시공원 결정 효력이 상실되므로 기 결정된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필요	예천읍 도시지역
9	읍부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 시설율 : 46.0%	- 예천 군관리계획상의 공원녹지구상 및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공원조성계획 결정 - 예천의 부족한 어린이공원시설의 결정과 예천의 지역적 특성, 문화, 여가의 활성을 위하여 예천군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용궁면 도시지역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 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2015년 9월말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 도시공원 결정 효력이 상실되므로 기 결정된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필요	
10	포동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 시설율 : 21.1%	- 예천 군관리계획상의 공원녹지구상 및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공원조성계획 결정 - 예천의 부족한 어린이공원시설의 결정과 예천의 지역적 특성, 문화, 여가의 활성을 위하여 예천군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2015년 9월말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 도시공원 결정 효력이 상실되므로 기 결정된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필요	감천면 도시지역

4. 공원별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

■ 백전공원

1)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구 분	시설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		구성비 (%)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신 설	합 계	1,500	690	-	-	100.0	
	기반시설	250	250	-	-	16.7	

구 분	시설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		구성비 (%)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조경시설	20	20	—	—	1.3	
	휴양시설	35	35	—	—	2.4	
	운동시설	50	50	—	—	3.3	
	편익시설	335	335	—	—	22.3	
	녹지및기타	810	—	—	—	54.0	
	◦ 시설율 : $690 \div 1,500 \times 100 = 46.0\%$ (법정 60%이하)						

■ 동본공원

1)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구 분	시설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		구성비 (%)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신 설	합 계	1,500	860	—	—	100.0	
	기반시설	370	370	—	—	24.7	
	조경시설	15	15	—	—	1.0	
	운동시설	90	90	—	—	6.0	
	편익시설	385	385	—	—	25.6	
	녹지및기타	640	—	—	—	42.7	
◦ 시설율 : $860 \div 1,500 \times 100 = 57.3\%$ (법정 60%이하)							

■ 남본공원

1)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구분	시설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		구성비 (%)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신설	합 계	2,300	920	—	—	100.0	
	기반시설	520	520	—	—	22.6	
	조경시설	110	110	—	—	4.8	
	운동시설	70	70	—	—	3.0	
	편의시설	220	220	—	—	9.6	
	녹지및기타	1,380	—	—	—	60.0	
	◦ 시설율 : $920 \div 2,300 \times 100 = 40.0\%$ (법정 60%이하)						

■ 청북공원

1)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구분	시설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		구성비 (%)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신설	합 계	3,000	1,430	—	—	100.0	
	기반시설	960	960	—	—	32.0	
	조경시설	55	55	—	—	1.8	

구분	시설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		구성비 (%)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225	225	—	—	7.5	
	편익시설	190	190	—	—	6.4	
	녹지및기타	1,570	—	—	—	52.3	
	◦ 시설율 : $1,430 \div 3,000 \times 100 = 47.7\%$ (법정 60%이하)						

■ 대심제1공원

1)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구분	시설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		구성비 (%)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신설	합 계	2,230	1,095	—	—	100.0	
	기반시설	765	765	—	—	34.3	
	조경시설	30	30	—	—	1.4	
	휴양시설	45	45	—	—	2.0	
	운동시설	20	20	—	—	0.9	
	편익시설	235	235	—	—	10.5	
	녹지및기타	1,135	—	—	—	50.9	
◦ 시설율 : $1,095 \div 2,230 \times 100 = 49.1\%$ (법정 60%이하)							

■ 대심제2공원

1)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구분	시설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		구성비 (%)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신설	합 계	1,600	865	—	—	100.0	
	기반시설	300	300	—	—	18.8	
	조경시설	55	55	—	—	3.4	
	운동시설	190	190	—	—	11.9	
	편익시설	320	320	—	—	20.0	
	녹지및기타	735	—	—	—	45.9	
	◦ 시설율 : $865 \div 1,600 \times 100 = 54.1\%$ (법정 60%이하)						

■ 대심제3공원

1)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구분	시설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		구성비 (%)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신설	합 계	2,500	1,365	—	—	100.0	
	기반시설	820	820	—	—	32.8	
	조경시설	50	50	—	—	2.0	
	운동시설	245	245	—	—	9.8	
	편익시설	250	250	—	—	10.0	
	녹지및기타	1,135	—	—	—	45.4	
	◦ 시설율 : $1,365 \div 2,500 \times 100 = 54.6\%$ (법정 60%이하)						

■ 우계공원

1)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구분	시설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		구성비 (%)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신설	합 계	1,600	685	—	—	100.0	
	기반시설	275	275	—	—	17.2	
	조경시설	25	25	—	—	1.6	
	운동시설	170	170	—	—	10.6	
	편익시설	215	215	—	—	13.4	
	녹지및기타	915	—	—	—	57.2	
	◦ 시설율 : $685 \div 1,600 \times 100 = 42.8\%$ (법정 60%이하)						

■ 읍부공원

1)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구분	시설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		구성비 (%)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신설	합 계	1,500	690	—	—	100.0	
	기반시설	380	380	—	—	25.3	
	조경시설	10	10	—	—	0.7	
	휴양시설	40	40	—	—	2.7	
	운동시설	80	80	—	—	5.3	
	편익시설	180	180	—	—	12.0	
	녹지및기타	810	—	—	—	54.0	
	◦ 시설율 : $690 \div 1,500 \times 100 = 46.0\%$ (법정 60%이하)						

■ 포동공원

1) 공원조성계획 총괄조서

구 분	시설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		구성비 (%)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신 설	합 계	7,615	1,610	—	—	100.0	
	기반시설	1,280	1,280	—	—	16.8	
	조경시설	70	70	—	—	0.9	
	휴양시설	80	80	—	—	1.0	
	운동시설	130	130	—	—	1.7	
	편익시설	50	50	—	—	0.7	
	녹지및기타	6,005	—	—	—	78.9	
◦ 시설율 : $1,610 \div 7,615 \times 100 = 21.1\%$ (법정 60%이하)							